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잘못 인용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과 명칭이 변경된 법령을 조례안에 반영하고, 포괄위임입법 금지, 예산총계주의 등 법령 체계에 맞지 않은 조항을 수정, 반영하여 현 시점에 적합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법령이 잘못 인용된 조항 수정
(안 제5조, 제17조, 제25조제1항)
나.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위배되는 조항 수정(안 제6조)
다.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는 조항 삭제(안 제11조)
라. 인용된 법령 중 개정된 법령 및 법령명칭 변경사항 반영
(안 제19조의2, 제22조의3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제4항, 제30조, 제32조, 제38조, 제39조, 제40조, 제63조, 제63조의2, 제66조)
마. 법령 체계에 맞지 않은 조항 삭제(안 제38조제2항～제5항, 제6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 - 45298(2018. 8.13.)〕
라.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 〔기획감사실 - 5993(2018. 8.10.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8.23.～2018. 9.11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16조 제2항”을 “법 제16조제2항제4호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1. 행정재산
 가. 공용재산
 나. 공공용재산
 다. 기업용재산
 라. 보존재산
2. 일반재산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 중 “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”를 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부터”로 한다.

제19조의2 단서 중 “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”를 “영 제11조의3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제25조제1항 중 “해지하고”를 “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”로 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 등” 이라 한다)는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준용한다.

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 외국인투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(이하”외국인 투자기업 등“ 이라한다)에 대부·”를 “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허가, 대부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」 제7조”를

“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7조의2”로, “지방산업단지”를 “일반산업단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”를 “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”로 한다.

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제2항 단서 중 “·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”를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9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1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46조”를 “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영 제64조의2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.

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

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9조제1호 중 “지방산업단지”를 “일반산업단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아파트형 공장내”를 “지식산업센터 내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4호 전단 중 “2003년 12월 31일”을 “2012년 12월 31일”로, “말함, 법률 제7698호,200511.8.”를 “말한다”로 한다.

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63조제1항제2호 중 “2회”를 “4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1년 3회”를 “2년 8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1년 4회”를 “3년 12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3조의2(과오납금)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영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6조 후단 중 “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② (생 략)	제5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법 제16조제2항제4호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,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6조(공유재산 관리대장)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 1. 행정재산 가. 공용재산 나. 공공용재산 다. 기업용재산 라. 보존재산 2. 일반재산
제11조(사용·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)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(연체료·변상금을 포함한다)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17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총 무상사용 기간	제17조(무상사용기간) ----------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----------

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.	----------.
제19조의2(교환차금의 납부)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납하게 할 수 있다.	제19조의2(교환차금의 납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 영 제11조의3에 따라 ----------.
제22조의3(사용료의 납부방법) 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범위안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.	제22조의3(사용료의 납부방법)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25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경우 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영 제9조제4호, 제23조, 제29조제1항제7호, 제30조, 제32조제3항, 제35조, 제38조제1항제25호,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.	제26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 등”이라 한다)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준용한다.
제27조 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	제27조 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---------- 따른 외국인투지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사용·

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(이하"외국인투자기업 등" 이라한다)에 대부·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수익허가, 대부,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」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,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	2.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7조의2 ---------- 일반산업단지----------
3.「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	3.----------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----------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생 략)	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.	④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	<삭 제>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(생 략)	제30조(토석채취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	②----------. ----------

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(·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평가한 매각 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	----------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-----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(이하 이 조에서 "대부료등"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	②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3항 및 영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사용·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	④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----------.
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	제38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대금을

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	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	<삭 제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
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<삭 제>
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<삭 제>
1. ~ 4. (생 략)	<삭 제>
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	<삭 제>

할 수 있다.	
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<삭 제>
제39조 (조성원가 매각)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(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)와 투자개발비(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	제39조 (조성원가 매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」 제7조,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,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	1.---------- ---------- 일반산업단지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2.「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」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	2.---------- 지식산업센터내-----
3.·4. (생 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제40조 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40조 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삭 제	
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2003년 12월 31일(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, 법률 제7698호,200511.8.)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, 건축면적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.	4. 2012년 12월 31일---------- 말한다----------
5. 삭 제	
제63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63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삭 제	
2. 100만원 초과 : 1년 2회 이내 분납	2. ---------- 4회 -------
3. 200만원 초과 : 1년 3회 이내 분납	3. ---------- 2년 8회 -------
4. 300만원 초과 : 1년 4회 이내 분납	4. ---------- 3년 12회 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제1항 규정에 의한 분납시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.	<삭 제>

제63조의2(과오납금) 영 제82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가산금은 연3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.	제63조의2(과오납금)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영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.
제66조(공유토지의 분필)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.	제66조(공유토지의 분필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---------- ----------.
제67조(준용)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·지침·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.	<삭 제>